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유럽인권재판소

## 유럽인권협약 제4조에 대한 해설서

---

노예제도 및 강제노동의 금지

2021년 12월 31일 개정

이 해설서는 재판소 사무국이 작성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쇄물 또는 전자 출판물의 형태로 번역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출판사나 단체는 [request to reproduce or republish a translation](#)에 연락해 승인 절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판례 해설서가 어느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번역([Pending translations](#))'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설서는 원래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가장 최근에는 2021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편집을 위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설서는 <https://ks.echr.coe.int>에서 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해설서 개정 관련 정보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ECHR\\_CEDH](https://twitter.com/ECHR_CED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물은 유럽평의회·유럽인권재판소의 동의를 받아 발간되었으며 이 번역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번역본 발행처(한국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 목차

일러두기 .....	4
<b>I. 일반 원칙 .....</b>	<b>5</b>
A. 제4조의 구조.....	5
B. 해석의 원칙.....	5
C. 인신매매의 구체적인 맥락 .....	6
<b>II. 노예제도 및 강제노동의 금지.....</b>	<b>8</b>
A. 노예 또는 예속 상태로부터의 자유.....	8
1. 노예 상태.....	8
2. 예속 상태.....	8
B.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의 금지 .....	9
C. 한계 .....	11
1. 구금 중 또는 조건부 석방 중의 작업 .....	12
2. 군복무 또는 민간대체복무 .....	13
3. 긴급 또는 재난 상황에 요구되는 역무.....	14
4. 시민의 일반적인 의무 .....	14
<b>III. 적극적 의무.....</b>	<b>16</b>
A. 적절한 입법 및 행정 체계를 수립할 적극적 의무 .....	16
B. 운영 조치를 취할 적극적 의무 .....	17
C. 조사를 수행할 절차적 의무 .....	19
<b>인용 판례 목록 .....</b>	<b>22</b>

## 일러두기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 "유럽재판소" 또는 "스트라스부르 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결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법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재판소가 발간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해설서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그 시리즈 중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협약(이하 "협약" 또는 "유럽협약") 제4조에 관한 판례법을 분석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해설서를 통해 이 분야의 주요 원칙들과 관련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된 판례는 리딩케이스이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그리고 최근의 판결과 결정들 중에서 선별한 것입니다.\*

재판소는 판결과 결정을 통해 제소된 개별사건에 대해 판단할 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협약상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보장하며 발전시킴으로써, 각국이 협약당사국으로서의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Ireland v. the United Kingdom*, § 154, 1978년 1월 18일, Series A no. 25,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Jeronovičs v. Latvia* [GC], no. 44898/10, § 109, ECHR 2016).

유럽인권협약 체제를 설립한 목적은 이처럼 공동의 이익에 관련된 공공정책의 문제들을 판단함으로써, 협약당사국들 전체의 인권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권법제를 확충하는 것입니다(*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 89, no. 30078/06, ECHR 2012). 실제로,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이 인권분야에서 "유럽의 공공질서에 대한 헌법적 문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no. 45036/98, § 156, ECHR 2005 VI,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N.D. and N.T. v. Spain* [GC], nos. 8675/15 및 8697/15, § 110, 2020년 2월 13일).

이 해설서는 협약의 해당 조항과 그에 관한 추가 의정서 조항들에 대해 주제어들을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서 다루어진 법적 쟁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 본문에서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추출한 색인으로부터 선별한 주제어목록(*List of keywords*)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가 수록된 HUDOC 데이터베이스(*HUDOC database*)는 주제어를 통한 검색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주제어검색을 이용하면 유사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판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에서의 논증과 결론이 주제어를 통해 요약되어 있음). 개별 사건의 주제어는 HUDOC에서 사건세부정보(*Case Details*) 태그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DOC 데이터베이스 및 주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UDOC 사용자 설명서(*HUDOC user manu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와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의 공식 언어(영어 및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작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decision)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지만 이 개정판 발간 당시 최종적인 것이 아닌 때에는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I. 일반 원칙

### 협약 제4조 - 노예제도 및 강제노동의 금지

- “1. 어느 누구도 노예 또는 예속 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  
 2. 어느 누구도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을 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3. 본 조의 적용상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본 협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구금 중 또는 그러한 구금으로부터의 조건부 석방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작업  
 (b) 국방의 의무를 위한 군복무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서 병역의무 대신 실시되는 의무  
 (c) 공동체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 또는 재난 상황에 요구되는 의무  
 (d) 시민의 일반적인 의무로서 부과되는 작업 또는 의무”

### HUDOC 키워드

노예 상태 (4-1) - 예속 상태 (4-1) - 인신매매 (4-1) - 강제적 노동 (4-2) - 의무적 노동 (4-2) - 피구금자에게 요구되는 작업 (4-3-a) - 조건부 석방 중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작업 (4-3-a) - 군복무 (4-3-b) - 민간대체복무 (4-3-b) - 긴급 상황에 요구되는 의무 (4-3-c) - 재난 상황에 요구되는 의무 (4-3-c) - 시민의 일반적인 의무 (4-3-d)

## A. 제4조의 구조

1. 협약 제4조는 협약 제2조 및 제3조와 함께 민주사회의 기본 가치 중 하나를 명시한다(*Siliadin v. France*, § 112; *Stummer v. Austria* [GC], § 116).
2. 협약 제4조제1항은 “어느 누구도 노예 또는 예속 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협약의 대부분 실제적 조항과 달리, 제4조제1항은 예외를 두지 않으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공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4조의 의무는 축소되지 않는다(*C.N. v. the United Kingdom*, § 65; *Stummer v. Austria* [GC], § 116).
3. 협약 제4조제2항은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을 금지한다(*ibid.*). 제4조 하의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의 개념은 사건의 특정 상황에서 인신매매의 구체적인 맥락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심각한 착취 사례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Zoletic and Others v. Azerbaijan*, § 148). 이러한 행위는 제4조에 따른 “노예 상태” 또는 “예속 상태”에 해당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을 수 있으며, 협약의 다른 조항에 따른 쟁점을 제기할 수 있다(*S.M. v. Croatia* [GC], §§ 300 및 303).
4. 협약 제4조제3항이 제2항과 함께 제4조 전체를 형성하고 어떤 작업이나 역무가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이라는 용어에 포함되지 않는지 나타낸다는 점에서, 협약 제4조제3항의 목적은 제2항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 그 자체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다(*ibid.*, § 120).

## B. 해석의 원칙

5. 재판소는 협약 조항을 그 안에 담긴 권리와 자유의 해석을 위한 유일한 준거 체계로 간주한 적이 없다. 재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협약 조항 적용의 주요 원칙 중 하나가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협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혀왔다. 국제조약의 하나인 협약은 1969년 5월 23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해석 규칙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재판소는 협약 문구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협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를 확인해야 한다. 재판소는 조항의 배경이 개인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라는 사실, 협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여러 조항 간 내적 일관성과 조화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체약국과 협약 사이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의 관련 규칙과 원칙을 고려해야 하며, 협약 자체가 국제법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협약은 가능한 한 국제법의 다른 규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인간 개인의 보호를 위한 수단인 협약의 대상과 목적은 협약의 보호조치가 실제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협약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Rantsev v. Cyprus and Russia*, §§ 273-275).

6. 협약 제4조에 따른 개념을 해석할 때, 재판소는 1926년 노예협약(1926 Slavery Convention)(*Siliadin v. France*, § 122), 노예제, 노예무역 및 노예제와 유사한 제도 및 관행의 철폐에 관한 보충협약(Supplementary Convention on the Abolition of Slavery, the Slave Trade and Institutions and Practices Similar to Slavery)(*C.N. and V. v. France*, § 90),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29호(ILO Convention No. 29)(강제노동협약)(*Van der Musselle v. Belgium*, § 32), 인신매매 방지 행동에 관한 유럽평의회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Action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인신매매 방지협약”) 및 2000년 채택된 의정서인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sed Crime)(“팔레르모 의정서”)(*Rantsev v. Cyprus and Russia*, § 282) 와 같은 국제규약을 활용한다.

7. 반대로, 재판소의 관할권은 협약에 관한 사안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재판소는 인신매매 방지협약과 같은 국제규약의 조항을 해석하거나, 피청구국이 이러한 국제규약에 포함된 기준을 준수했는지에 관한 문제를 심사할 수 없다(*V.C.L. and A.N. v. the United Kingdom*, § 113).

8. 협약의 특수성 또는 협약이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문서라는 사실과 이에 따라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 분야에서 점점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되며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위반이 더 엄격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Siliadin v. France*, § 121; *Stummer v. Austria* [GC], § 118).

## C. 인신매매의 구체적인 맥락

9. 제4조는 인신매매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노예 상태”, “예속 상태”, “강제적 및 의무적 노동”을 규정하고 있다(*Rantsev v. Cyprus and Russia*, § 272).

10. 인신매매는 착취의 본질과 목적상 소유권에 수반하는 권한의 행사에 기초한다. 인신매매는 인간을 보통 성 산업이나 다른 부문에서 흔히 대금을 거의 또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매매되어 강제적 노동에 투입되는 상품으로 취급한다. 이러한 인신매매의 성격은 이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은 피해자의 활동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신매매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근무하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와 협박을 수반한다. 인신매매 방지협약과 함께 공개된 설명 보고서에는 인신매매가 과거 세계 노예무역의 현대적인 형태라고 기술되어 있다(*ibid.*, § 281; *M. and Others v. Italy and Bulgaria*, § 151). 인신매매가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자유를 위협하며 민주사회와 협약에 설명된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Rantsev v. Cyprus and Russia*, § 282).

11. *S.M. v. Croatia*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어떤 행위나 상황에 대해 제4조에 따라 인신매매 쟁점을 제기하려면 인신매매 방지협약과 팔레르모 의정서에 따른 인신매매의 국제적 정의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세 가지 구성요소는 (1) 행위(사람의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 (2) 수단(무력의 행사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악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나 이익의 제공이나 수령), (3) 착취적 목적(최소한, 타인에 대한 매춘의 착취나 그 밖의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이나 강제고용, 노예제도나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또는 장기의 적출을 포함)이다(§§ 290 및 303). 제4조의 관점에서 볼 때, 인신매매의 개념은 조직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인신매매와 관련이 있다(§§ 296 및 303; 또한 *Zoletic and Others v. Azerbaijan*, § 155 참조).

12. 인신매매가 제4조의 적용 범위에 속하긴 하나, 이 점 때문에 사건의 특정 상황에서 인신매매와 관련된 특정 형태의 행위에 대해 협약의 다른 조항에 따라 쟁점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S.M. v. Croatia* [GC], §§ 297 및 303). 특정 상황이 “인신매매”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 여부 및/또는 강제 매춘에 대한 별도의 쟁점을 제기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사건의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하는 사실의 문제이다(*ibid.*, §§ 302-303 및 *Zoletic and Others v. Azerbaijan*, § 157).

## II. 노예제도 및 강제노동의 금지

### A. 노예 또는 예속 상태로부터의 자유

#### 협약 제4조제1항

“1. 어느 누구도 노예 또는 예속 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

#### HUDOC 키워드

노예 상태 (4-1) - 예속 상태 (4-1) - 인신매매 (4-1)

### 1. 노예 상태

13. 재판소는 제4조에 따른 “노예 상태”의 범위를 고려할 때, 노예 상태를 “한 사람의 소유권에 수반하는 일부 혹은 모든 권한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행사되는 자의 지위 또는 상태”로 정의하는 1926년 노예협약에 수록된 노예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를 참고한다(*Siliadin v. France*, § 122).

14. 18세의 토고 국적의 청구인이 몇 년 동안 휴식일 없이 하루 15시간 동안 무급 가정부로 일하며 착취당했던 *Siliadin v. France*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받은 대우가 노예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예속 상태와 강제적 및 의무적 노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분명히 개인의 자율권을 박탈당했지만, 청구인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행사되어 청구인이 “물건”의 지위로 전락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노예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122).

15. 미성년자 소녀의 인신매매 혐의에 관한 사건에서도, 재판소는 또한 피해자가 노예 상태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충분한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주장된 결혼에 대해 청구인의 아버지가 얼마간의 돈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상황에서 이러한 금전적 기여는 노예 상태 개념을 유발하게 될 소유권 이전에 수반하는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결혼이 사회마다 매우 다를 수 있는 뿌리 깊은 사회적, 문화적 함의를 지니며, 따라서 이러한 금액은 현대 사회의 여러 다양한 문화의 공통적인 전통인, 한 가족이 다른 가족에게 준 선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M. and Others v. Italy and Bulgaria*, § 161).

### 2. 예속 상태

16. 협약의 목적상 “예속 상태”는 강압의 행사로 부과되는 역무를 제공할 의무를 의미하며, 노예 상태 개념과 연결된다(*Seguin v. France* (dec.); *Siliadin v. France*, § 124).

17. “예속 상태”의 개념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사항은 “특히 심각한 형태의 자유에 대한 부정”이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특정 역무를 수행할 의무 외에도... ‘농노’로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신세를 지는 것과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것”이 포함된다(*ibid.*, § 123).

18. 재판소는 예속이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의 구체적인 형태, 혹은 달리 표현하면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의 “악화된” 형태라고 언급했다. 사실, 협약 제4조의 의미 내에서 예속과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을 구분하는 근본적 특징은 피해자가 자신의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고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에 달려 있다. 재판소는 이러한 느낌이 앞서 언급한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거나 해당 상황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 또는 존속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다(*C.N. and V. v. France*, § 91).

19.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가사 노역 형태의 예속은 인신매매와 착취와는 구별되고 지시에 따르도록 강제하기 위해 공공연한 강압과 더 미묘한 형태의 강압이 모두 동반되는 복잡한 일련의 역학 관계를 갖는 특정 범죄라고 강조했다(*C.N. v. the United Kingdom*, § 80).

20. *Siliadin v. France*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강제적 노동을 하도록 요구받았다는 사실 외에도, 모아둔 재산이 없었고 취약한 상태였으며 집주인의 통제를 받으며 가사노동을 했던 집 이외의 다른 곳에서 살아갈 만한 생계 수단도 없었고 이동의 자유와 자유 시간도 갖지 못한 채 집주인에게 모든 생활을 의존했기 때문에 청구인이 예속 상태에 있었다고 판결했다(§§ 126-127). 또한 재판소가 첫 번째 청구인에 대해서는 예속 상태에 있었다고 판결했으나 두 번째 청구인에 대해서는 예속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결한 *C.N. and V. v. France* 사건을 참조하라(§§ 92-93).

## B.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의 금지

### 협약 제4조제2항

“2. 어느 누구도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을 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 HUDOC 키워드

강제적 노동 (4-2) - 의무적 노동(4-2)

21. 협약 제4조제2항은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을 금지한다(*Stummer v. Austria* [GC], § 117). 그러나 제4조는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지 않으며, 유럽협약 준비작업에 관한 다양한 유럽평의회 문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Van der Musselle v. Belgium*, § 32).

22. *Van der Musselle v. Belgium*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29호에 의거하여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이라는 용어를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29호의 목적상,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이라는 용어는 “어떤 사람이 어떤 처벌의 위협하에 요구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작업 또는 의무”를 의미한다. 재판소는 이 정의를 협약 제4조제2항을 해석하기 위한 초석으로 삼았다(*ibid.*; *Graziani-Weiss v. Austria*; *Stummer v. Austria* [GC], § 118 및 *Adigüzel v. Turkey* (dec.), §§ 26-27 및 이 사건에서 인용된 판례법에 대한 언급 참조).

23. *S.M. v. Croatia*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4조에 따른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의 개념이 사건의 특정 상황에서 인신매매의 구체적인 맥락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매춘과 같은 심각한 착취 사례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위 3항 참조).

24. 영어 단어 “노동(labour)”이 흔히 육체노동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단어는 프랑스 단어 “업무(travail)”의 넓은 의미도 내포하고 있으며, 현재 제4조의 문맥에서 채택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후자의 의미이다. 재판소는 이를 뒷받침하는 용례를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29호 제2조제1항(“모든 작업 또는 의무(all work or service)”, 프랑스어로 “*tout travail ou service*”), 유럽협약 제4조제3항제(d)호(“모든 작업 또는 의무(all work or service)”, 프랑스어로 “*tout travail ou service*”) 및 해당 활동이 결코 육체노동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명칭 자체에서 찾고 있다(*Van der Musselle v. Belgium*, § 33).

25. 협약 제4조제2항에서 의미하는 “노동”의 개념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재판소는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하에 요구받는 모든 노동이 반드시 이 조항에 의해 금지되는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관련된 작업의 유형과 양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강제된 노동”과 다른 가족이나 같이 사는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구별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구별 기준에 따라, *Van der Musselle v. Belgium*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을 무료로 변호하도록 요구받은 변호사가 강제 노동을 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과도한 부담”이라는 개념을 채택했다(§ 39; 또한 *C.N. and V. v. France*, § 74 참조).

26. 첫 번째 형용사인 “강제적”이라는 단어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의 개념을 떠오르게 한다. 두 번째 형용사 “의무적”의 경우, 이 단어는 단지 어떤 형태의 법적 강제나 의무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유롭게 협상된 계약에 따라 수행하기로 한 작업은 제4조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와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로 약속했으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제4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Van der Musselle v. Belgium*, § 34). 어떤 작업이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위협하에 요구”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행되는, 즉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작업이어야 한다(*ibid.*).

27. 재판소는 1999년 국제노동기구의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에서 채택한 국제보고서 “강요의 비용”에서 “처벌”의 개념이 “모든 처벌”이라는 용어의 사용에서 확인되었듯이 넓은 의미로 사용된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재판소는 “처벌”이 신체적 폭력이나 제약까지도 의미할 수 있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경찰이나 출입국 관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협박과 같이 더 미묘한 심리적 성격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C.N. and V. v. France*, § 77). 강제 매춘의 맥락에서, 재판소는 “강제”가 재판소의 제4조 판례법 및 국제노동기구와 다른 국제자료에서 확인된 미묘한 형태의 강압적 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S.M. v. Croatia* [GC], § 301).

28. 재판소는 첫 번째 기준, 즉 “모든 처벌의 위협”이라는 기준이 견습 변호사인 청구인이 파기원 변호사회(Council of the *Ordre des avocats*)에 의해 견습 변호사 명부에서 제외되거나 변호사 등록 신청이 거부될 위험이 있었던 *Van der Musselle v. Belgium* (§ 35) 사건, 변호사인 청구인이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거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던 *Graziani-Weiss v. Austria* (§ 39) 사건, 청구인이 출신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던 *C.N. and V. v. France* (§ 78) 사건에서 충족되었다고 판단했다.

29. *Siliadin v. France* 사건에서, 재판소는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처벌” 위협을 받지 않았지만, 청구인이 프랑스 영토에 불법 체류했고 경찰에 체포될 것을 두려워하는 외국에 있는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수준에 있어 동등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았다. 청구인의 두려움은 갈수록 커졌고, 청구인은 집주인의 말을 들으면 합법적인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 118).

30. 이와 반대로, *Tibet Mentesh and Others v. Turkey* (§ 68) 사건에서, 재판소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제소한 공항 상점의 근로자들이 24시간 간격의 교대 근무를 포함하는 근로조건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에게 초과근무를 강제하기 위해 어떠한 유형이든 신체적, 정신적 강요가 가해졌다는 징후도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소는 해당 근로조건을 거절할 경우 해고될 수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제4조의 목적상 “처벌의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첫 번째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협약 제4조의 물적 관할권(*ratione materiae*)과 양립할 수 없음을 근거로 청구를 각하했다.

31. 법의학자인 청구인이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해야 했으며 청구를 제기한 *Adigüzel v. Turkey* (dec.),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일하기로 선택했을 때 청구인이 처음부터 기본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수당 없이 근무할 수 있음을 당연히 알아야 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청구인은 초과근무에 대해 보상 휴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당한 부담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었다. 초과근무를 거부할 경우 감봉되거나 해고될 위험은 해당 작업이 “처벌”의 위협하에

요구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불충분했다. 앞서 언급한 사항을 고려한 후, 재판소는 청구인에게 요구된 초과근로가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협약 제4조의 물적 관할권과 양립할 수 없음을 근거로 청구를 각하했다(§§ 30-35).

32. 두 번째 기준, 즉 청구인이 문제의 작업을 자발적으로 제공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Van der Musselle v. Belgium*, § 36),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수행하도록 요구받은 업무에 대해 사전에 동의했는지 고려했지만 이러한 사전동의 요소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부여하지는 않았다(*ibid.*; *Graziani-Weiss v. Austria*, § 40; *Adigüzel v. Turkey* (dec.), § 30).

33. 그 대신, 재판소는 수행하도록 요구된 역무가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제4조의 기본적인 목적에 비추어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할 것이다(*ibid.*, § 37; *Bucha v. Slovakia* (dec.)). 재판소가 특정 직업의 구성원에게 지워진 의무에 대해 어떤 것이 정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기준은 제공된 역무가 관련자의 정상적인 직업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 해당 역무에 대해 보수가 지급되는지 또는 역무에 다른 보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 직업적 의무가 사회연대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의무에 따른 부담이 과도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한다(*Graziani-Weiss v. Austria*, § 38; *Mihal v. Slovakia* (dec.), § 64).

34. 재판소가 제4조에 따른 쟁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는 직원이 수행한 작업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해당 작업이 자발적으로 수행되었고 보수 지급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건(*Sokur v. Ukraine* (dec.)), 청구인이 수입이 더 적은 자리로 전근되었던 사건(*Antonov v. Russia* (dec.)), 사회부조법이 해당 일자리가 청구인에 적합한지와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어떤 종류의 일자리든 찾고 수락하도록 요구하면서 청구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를 줄였던 사건(*Schuitemaker v. the Netherlands* (dec.)), 공증인인 청구인이 비영리단체를 위해 행동할 때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요구되었던 사건(*X. v. Germany*, 위원회 결정) 또는 청구인이 활동 보조인 일을 하는 장애인의 친척에게 국가가 부과한 근로 및 급여 조건의 불공정성에 대해 청구를 제기했던 사건(*Radi and Gherghina v. Romania* (dec.)) 등이 있다. 이와 반대로, 재판소는 *Chowdury and Others v. Greece* 사건에서 그리스의 특정 지역의 딸기 수확 업계에서 일한 청구인들이 신체적으로 힘든 조건 속에서 무장 경비원의 감독을 받으며 무보수로 일한 상황이 인신매매와 강제적 노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 C. 한계

### 협약 제4조제3항

“3. 본 조의 적용상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a) 본 협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구금 중 또는 그러한 구금으로부터의 조건부 석방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작업
- (b) 국방의 의무를 위한 군복무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서 병역의무 대신 실시되는 역무
- (c) 공동체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 또는 재난 상황에 요구되는 역무
- (d) 시민의 일반적인 의무로서 부과되는 작업 또는 역무”

### HUDOC 키워드

피구금자에게 요구되는 작업 (4-3-a) - 조건부 석방 중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작업 (4-3-a) - 군복무 (4-3-b) - 민간대체복무 (4-3-b) - 긴급 상황에 요구되는 역무 (4-3-c) - 재난 상황에 요구되는 역무 (4-3-c) - 시민의 일반적인 의무 (4-3-d)

35. 제4조제3항은 제2항의 해석에 도움을 준다. 제4조제3항의 4개 조항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나, 공익, 사회연대 및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의 정상적인 것에 관한 지배적인 개념에 기초한다(*Van der Musselle v. Belgium*, § 38; *Karlheinz Schmidt v. Germany*, § 22; *Zarb Adami v. Malta*, § 44).

## 1. 구금 중 또는 조건부 석방 중의 작업

36. 제4조제3항제(a)호는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이라는 용어가 “구금 중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작업”(Stummer v. Austria [GC], § 119) 또는 그러한 구금으로부터의 조건부 석방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다.

37. 재판소는 무엇이 “구금 중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작업”로 여겨질 수 있는지 확정할 때, 회원국들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ibid.*, § 128).

38. 예를 들어, 재판소는 재범 재소자가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석방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해야 했던 사건을 심사할 때, 쟁점이 된 작업이 의무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제4조제3항제(a)호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근거로 협약 제4조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Van Droogenbroeck v. Belgium*, § 59). 재판소는 요구된 작업이 재소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것이었고 유럽평의회 일부 회원국에서 비슷한 조항을 찾아볼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에 따라 명령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통상적인” 것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ibid.*; *Stummer v. Austria* [GC], § 121; *De Wilde, Ooms and Versyp v. Belgium*, § 90).

39. 재소자의 보수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제4조에 재소자의 작업에 대한 보수를 설명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Twenty-one detained persons v. Germany*, 위원회 결정; *Stummer v. Austria* [GC], § 122). 재판소는 이후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이 발전했으며, 특히 1987년 및 2006년 유럽교정시설규칙에 이러한 발전이 반영되었다고 언급했다(*Zhelyazkov v. Bulgaria*, § 36; *Floroiu v. Romania* (dec.), § 34). 하지만, 재판소는 재소자가 수행한 작업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유형의 작업이 “구금 중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ibid.*, § 33).

40. 예컨대 *Floroiu v. Romania* 사건에서, 재판소는 재소자들이 보수를 받고 작업을 하거나 교도소의 일상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의 경우, 보수를 받는 대신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법에 따르면, 재소자들은 각 작업에 적용되는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두 유형의 작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잔여 형기 중 상당한 기간을 감면받은 사실을 고려한 후 청구인이 수행한 작업에 대해 전혀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따라서 청구인이 수행한 작업을 협약 제4조제3항제(a)호에서 의미하는 “구금 중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35-37).

41. 최근, 재판소 대재판부는 제4조가 국가에 사회보장제도, 특히 노령연금제도에 교도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재소자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대재판부는 체약국의 절대다수가 어떤 방식으로든 재소자들을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가입시키거나 특수한 보험제도를 제공하지만, 과반을 조금 넘는 체약국만이 노령연금제도에 교도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재소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므로 오스트리아법에 따라 모든 재소자가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작업을 수행하는 재소자가 실업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나 노령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은 오스트리아법이 유럽법의 발전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tummer v. Austria* [GC], § 131). 따라서, 대재판부는 작업을 수행하는 재소자의 노령연금제도 가입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재판부는 가능한 한 작업을 수행하는 재소자는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유럽교정시설규칙 제26.17조가 이와 같이 발전하는 추세를 반영하나 이를 협약 제4조에 따른 의무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노령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채 재소자로서 수행하는

의무적 작업은 제4조제3항제(a)호에서 의미하는 “구금 중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ibid.*, § 132; *Floroiu v. Romania* (dec.), § 32).

42. 재소자의 경우 정년이 된 후에도 교도소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며 청구인이 이러한 재소자의 의무에 대해 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부과된 작업의 목적, 성격, 범위 및 수행 방법을 고려하고 이 문제에 대한 유럽평의회 회원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주목한 후, 협약 제4조에 따라 절대적인 금지되는 사항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정년이 된 후에도 요구되는 작업을 포함해 청구인이 구금 중 수행해야 하는 의무적 작업은 협약 제4조제3항제(a)호에서 의미하는 “구금 중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Meier v. Switzerland*, §§ 72-79).

## 2. 군복무 또는 민간대체복무

43. 제4조제3항제(b)호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의 범위에서 “국방의 의무를 위한 군복무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서 병역의무 대신 실시되는 의무”를 제외한다(*Bayatyan v. Armenia* [GC], § 100; *Johansen v. Norway*, 위원회 결정).

44. 청구인들이 영국군에 입대할 당시 미성년자였던 *W., X., Y. and Z.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 대한 위원회 결정에서, 위원회는 청구인들의 군복무에 제4조제3항의 제한 조항이 적용되므로 해당 군복무가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해당한다는 모든 청구는 협약 제4조제2항제(b)호의 명시적 조항에 비추어 청구 근거가 없음이 명백함을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45. 하지만, 위원회는 제4조가 “예속”과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을 구별하며, 실제로 종종 “예속”과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이 겹쳐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둘을 똑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한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이라는 용어의 범위에서 군복무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조항이 모든 상황에서 군복무를 “노예 또는 예속”과 관련된 심사로부터 반드시 제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W., X., Y. and Z.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성년이 된 후 입대하는 군인이 복무조건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군복무에 따른 자유와 개인적 권리의 제한이 “노예 또는 예속”의 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약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ibid.*). 위원회는 부모의 동의를 받고 입대한 청구인이 어린 나이였다는 점 때문에 군인의 정상적인 조건이 “예속” 상태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ibid.*).

46. 그러나 최근 *Chitos v. Greece* 사건에서는 군 장교가 계약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모두 이행하기 전 제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의무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전술한 위원회의 해석에서 벗어나 제4조제3항의 제한사항이 징병제만을 목적으로 하며 직업군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제4조제3항제(b)호를 전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4조제3항제(b)호를 해석할 경우, 두 가지 이유에서 의무병역제를 시행 중인 국가의 병역의무에 제4조제3항제(b)호가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첫째, 제4조제3항제(b)호는 직업군인이 아닌 징집병일 것이 분명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제4조제3항제(b)호 마지막 부분에서의 병역의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소는 또한 유럽사회권위원회(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와 각료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가 취한 견해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29호에서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내용을 확인했다(§§ 83-89).

47. 앞서 언급한 *Chitos v. Greece*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가 학업을 마친 군 장교에 대해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조기 전역을 신청할 경우 군 장교의 교육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으나 관련된 서로 다른 이익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특정 상황에서,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청구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가했기 때문에 제4조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109; 이와

반대로, 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금이 의무적이지 않았던 *Lazaridis v. Greece* (dec.) 참조).

### 3. 긴급 또는 재난 상황에 요구되는 의무

48. 제4조제3항제(c)호는 공동체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 또는 재난 상황에 요구되는 의무를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총기 사용권 보유자가 전염병 방지 활동의 일환으로 여우굴에 가스를 살포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심사한 사건에서, 이러한 의무가 공동체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 또는 재난 상황에 요구되는 의무를 허용하는 제4조제3항제(c)호, 또는 시민의 일반적인 의무로서 부과되는 작업 또는 의무를 허용하는 제4조제3항제(d)호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전술한 의무가 강제적 노동의 개념에 속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설명했다(*S. v. Germany*, 위원회 결정). 청구인이 북부 노르웨이의 치과 공공진료소에서 1년을 근무하도록 한 요건을 다룬 사건에서, 위원회의 두 구성원은 문제의 의무가 공동체의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이며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은 아니라고 판단했다(*I. v. Norway*, 위원회 결정).

### 4. 시민의 일반적인 의무

49. 제4조제3항제(d)호는 시민의 일반적인 의무로서 부과되는 작업 또는 의무를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의 범위에서 제외한다(*Van der Musselle v. Belgium*, § 38).

50. *Van der Musselle v. Belgium* 사건에서, 재판소는 견습 변호사인 청구인이 적은 급여와 비용 상환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았지만, 이러한 불이익은 청구인이 누리는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과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소는 보수를 받고 수행하는 작업이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적은 급여와 비용 상환은 어떤 것이 비례적인지 또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을 고려할 때 적절한 요소를 구성한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자신에게 할당된 업무로 인해 과도한 업무 부담을 받지 않았으며, 문제의 법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비용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청구인이 협약 제4조제2항의 목적상 강제적 노동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34-41).

51. 최근의 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응급의료에 참여해야 하는 의사의 의무가 제4조제2항의 목적상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으면서 청구의 관련 부분에 대해 명백히 근거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Steindel v. Germany* (dec.)).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특히 (i) 제공되는 의무에 대해 보수가 지급되고 해당 의무가 의사의 정상적인 직업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ii) 문제의 의무가 전문적, 시민적 연대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응급상황 방지를 목표로 한다는 점, (iii) 청구인이 받는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모두 적절한 주장으로 판단했다.

52. 위원회와 재판소는 또한 “시민의 일반적인 의무로서 부과되는 작업 또는 의무”가 의무적 배심원 의무(*Zarb Adami v. Malta*), 의무적 소방 의무 또는 의무 대신 납부하는 기부금(*Karlheinz Schmidt v. Germany*),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Reitmayr v. Austria*), 응급의료에 참여할 의무 (*Steindel v. Germany*) 또는 고용주 특성상 직원의 급여와 임금에서 특정 세금,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정산하고 원천징수를 해야 할 회사의 법적 의무(*Four Companies v. Austria*, 위원회 결정) 등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53. 강제적 노동의 개념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에는 무엇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 속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포함된다. 그 자체로는 정상적인 작업이나 노동일지라도 이를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집단이나 개인의 선택이 차별적인 요소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 이러한 작업이나 노동이 사실상 비정상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소가 제4조의 목적상 강제적 및 의무적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쟁점이 된 사실이 제4조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제14조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지도 않는다.(*Van der Musselle v. Belgium*, § 43; *Zarb Adami v. Malta*, § 45). 예를 들어, 시민의 의무를 부과할 때 남성과 여성을 부당하게 차별할 경우 이러한 의무는 협약 제4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제14조를 위반할 것이다(*ibid.*, § 83; *Karlheinz Schmidt v. Germany*, § 29).

### III. 적극적 의무

54. *Siliadin v. France*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2조, 제3조, 제8조와 같은 특정 협약 조항에 대해 국가가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자제했다는 사실은 국가가 협약 제1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77).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협약 제4조의 준수를 국가 당국의 직접적인 조치로만 제한하는 것은 특히 이 문제와 관련된 국제 제도와 일치하지 않고, 이를 무효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시했다(§ 89). 따라서 재판소는 협약 제4조에 따라 각국이 적극적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적극적 의무의 두 가지 측면, 즉 입법 및 행정 체계를 수립할 의무와 운영 조치를 취할 의무는 실체적 의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 번째 측면은 조사를 수행할 절차적 의무와 관련이 있다(*S.M. v. Croatia* [GC], § 306).

#### A. 적절한 입법 및 행정 체계를 수립할 적극적 의무

55. 제4조는 회원국이 개인을 노예, 예속,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 상태로 계속 유지하려는 모든 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기소할 것을 요구한다(*C.N. v. the United Kingdom*, § 66; *Siliadin v. France*, § 112; *C.N. and V. v. France*, § 105. 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회원국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입법 및 행정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Rantsev v. Cyprus and Russia*, § 285).

56. 인신매매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재판소는 팔레르모 의정서와 인신매매 방지협약에서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조치와 더불어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포함하는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포괄적인 접근법의 필요성을 언급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소는 그 의견에서 이 두 국제규약의 조항으로부터 거의 모든 유럽평의회 회원국을 포함한 체약국들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다루는 조치를 종합한 것만이 인신매매 퇴치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견해를 형성했다. 따라서, 재판소는 인신매매 행위를 처벌하고 기소할 의무가 인신매매 퇴치에 대한 회원국의 일반적인 약속의 한 측면일 뿐이며, 제4조에 따라 발생하는 적극적 의무의 정도는 이러한 광범위한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ibid.*). 그러므로, 회원국은 자신의 적극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인신매매 방지 및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및 행정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V.C.L. and A.N. v. the United Kingdom*, § 151).

57.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국내법에 규정된 보호조치의 범위가 인신매매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보호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재판소는 인신매매범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조치 외에도 제4조가 인신매매를 은폐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사업에 대해 회원국이 적절한 규제 조치를 취할 것 또한 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국가 이민 규정은 인신매매의 장려, 조장 또는 용인에 대한 관련 우려를 다루어야 한다(*Rantsev v. Cyprus and Russia*, § 284). 그 밖에도, 국가는 법 집행관과 이민 담당 공무원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ibid.*, § 287).

58. 재판소는 앞서 언급한 원칙들이 인신매매 및 개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에도 동일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재판소는 인신매매가 착취의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는 것을 포함하며 착취가 강제적 노동을 포함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소는 이 점에 있어서 협약 제4조제2항이 국가가 인신매매 및 개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인신매매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체계와 규제체계를 수립하는 동시에 인신매매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사람을 인신매매 및 강제적 노동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행위를 효과적으로 기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러한 인신매매 범주에 대응할 적극적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Chowdury and Others v. Greece*, §§ 86-89 및 103-104).

59. 재판소는 *Siliadin v. France* (§ 148), *C.N. and V. v. France* (§ 108), *C.N. v. the United Kingdom* (§ 76) 등의 사건에서 사건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시기에 시행 중인 법령이 협약 제4조의 범위에 속하는 대우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청구인들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반면, *Rantsev v. Cyprus and Russia*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시된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이 사건의 특정 사실에 대한 러시아의 관할권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러시아의 입법 및 행정 체계가 인신매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Ibid.*, §§ 301-303; *V.F. v. France* (dec.); *J.A. v. France* (dec.)). 이 사건에서, 키프로스에서 인신매매가 자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고 여러 보고서에서 키프로스 이민 정책과 입법적 흠결이 키프로스로의 여성 인신매매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도 불구하고 키프로스의 연예인 비자 제도가 청구인의 딸인 란체프에게 인신매매와 착취를 방지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키프로스 정부가 적절한 입법 및 행정 체계를 수립할 적극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90-293). *T.I. and Others v. Greece* 사건에서, 재판소는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가 사건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시기에 별도의 형사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고, 덜 중한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 인신매매 범죄는 공소시효가 더 짧았기 때문에 피고 중 2명에 대한 기소가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되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고려할 때, 일부 절차에 적용되는 법체계가 인신매매범을 처벌하기에 효과적이지 않았으며 인신매매 방지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L.E. v. Greece* 사건에서 재판소는 개정된 법령이 청구인에게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 B. 운영 조치를 취할 적극적 의무

60. 협약 제4조는 특정 상황에서 국가가 제4조를 위반하는 대우의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antsev v. Cyprus and Russia*, § 286; *C.N. v. the United Kingdom*, § 67). 특정 사건의 상황에서 운영 조치를 취할 적극적 의무가 발생하려면, 식별된 개인이 협약 제4조를 위반하는 대우를 당할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거나 이러한 위험에 처했다는 신뢰할 만한 의혹이 발생하는 상황을 국가기관이 알았거나 당연히 알았어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내려진 사건에서는, 국가기관이 해당 상황이나 위험에 대해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권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제4조 위반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ibid.* and *V.C.L. and A.N. v. the United Kingdom*, § 152).

61. 협약 제4조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운영 조치의 유형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인신매매 방지협약이 회원국에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인신매매의 맥락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인신매매 방지 조치는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인신매매 방지기구 간 조율을 강화하고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에 대한 요구를 억제하는 조치들을 포함한다. 피해자 보호 조치는 적격자에 의한 피해자의 신원 확인 및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회복 지원을 포함한다(*Ibid.*, § 153). 국가는 관련 조치를 결정할 때 인신매매 피해자의 취약성, 특히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고려해야 한다(*Ibid.*, § 161;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인 청구인이 협약 제8조에 반하는 방식으로 두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건인 *A.I. v. Italy*, §§ 103- 104 및 국가가 협약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미성년자 성 학대와 관련한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 착취의 피해자인 미성년자를 보호하지 못한 사건인 *N.Ç. v. Turkey*, § 133 참조).

62. 하지만, 현대 사회의 치안 유지와 관련된 어려움과 우선순위 및 자원을 고려해야 하는 운영상의 선택을 참작할 때, 운영 조치를 취할 의무는 국가기관에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가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C.N. v. the United Kingdom*, § 68; *Rantsev v. Cyprus and Russia*, § 287).

63. 재판소는 인신매매 방지협약이나 다른 국제규약을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기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인신매매의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기소는 특정 상황에서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영 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와 상충할 수 있다(*V.C.L. and A.N. v. the United Kingdom*, § 158-159 및 *G.S. v. the United Kingdom* (dec.), § 22).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관할기관이 팔레르모 의정서 및 인신매매 방지협약에서 식별된 기준에 기초하여 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원을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조사를 마친 후 가능한 한 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판결했다(*V.C.L. and A.N. v. the United Kingdom*, §§160-161). 재판소는 또한 관할기관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이후 기소 결정을 내릴 때 해당 조사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결과에 구속받지 않을 것이나, 이러한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앞서 언급한 국제규약에 포함된 인신매매의 정의와 일치하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ibid*, § 162).

64. *Rantsev v. Cyprus and Russia* 사건에서, 특히 청구인의 딸인 란체바가 인신매매의 피해자였는지 여부와 란체바의 양육권을 M. A에 맡기려는 결정과 이들이 여러 국내법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경찰이 조사하지 않은 사실은 재판소가 키프로스 국가기관이 란체바를 인신매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298).

65. *V.F. v. France* 사건에서, 재판소는 프랑스의 나이지리아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현상의 규모와 인신매매 피해자가 보호를 받기 위해 국가기관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인식하면서도, 사건의 상황에 비추어 단순히 청구인이 자신의 상황을 국가기관에 신고하려고 시도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했다. 따라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가 경찰이 청구인을 추방하기로 결정했을 때 청구인이 인신매매 조직망의 피해자임을 알았거나 당연히 알았어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66. *Chowdury and Others v. Greece* 사건에서, 재판소는 그리스가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청구인들이 연루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공식 보도와 언론을 통해 알았던 국가기관이 인신매매 방지와 청구인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111-115).

67. *V.C.L. and A.N.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인신매매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기소가 협약 제4조에 따른 쟁점을 제기했는지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했다. 재판소는 영국이 영국 내 대마초 공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출신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4조에 따른 운영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나타내는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기관은 먼저 이들의 인신매매 피해자 지위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채 형사 범죄로 기소했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또한 청구인들이 이후 해당 기관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항소법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최초 기소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이 결정에 대해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언급했다(§§ 172-173 및 181-182).

68. 반면, *G.S.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재판소는 항소법원이 인신매매의 성인 피해자인 청구인이 마약 관련 범죄 유죄판결에 대해 신청한 항소 허가를 거부했을 때, 청구인이 마약 관련 범죄를 행하도록 강요받은 정도를 고려한 후 해당 강요 수준이 청구인의 유책성을 상쇄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재판소는 사건의 상황이 인신매매 방지협약 제26조 및 인신매매 방지 지침 제8조와 양립할 수 있다고 평가했던 항소법원의 심사 과정과 항소 허가 거부 결정이 국가가 제4조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인 청구인을 보호하기 위한 운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4).

## C. 조사를 수행할 절차적 의무

69. 협약 제4조는 인신매매(*Rantsev v. Cyprus and Russia*, § 288), 가사 예속(*C.N. v. the United Kingdom*) 또는 강제 매춘(*S.M. v. Croatia* [GC], § 307)과 관련하여 이 조에 따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신뢰할 만한 의혹이 있는 경우 조사를 수행할 절차적 의무를 포함한다. 제4조에 따른 절차적 의무의 요건은 협약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도출되는 원칙을 바탕으로 수립된다(*S.M. v. Croatia* [GC], §§ 309-311).

70. 제4조에 따른 절차적 요건은 국가의 대리인이 가한 대우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이 가한 대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사하게 적용된다. 조사를 수행할 절차적 요건은 피해자 또는 가까운 친척의 제소 여부에 달려 있지 않으며, 국가기관이 해당 사안을 인지할 경우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조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사건에 연루된 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결과의 의무가 아닌 수단의 의무로서 책임자를 확인하고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확인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은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의 상황을 규명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조사에 대한 결론은 모든 관련 요소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분석에 기초하여 내려져야 한다. 또한, 즉각성과 합리적인 신속성에 대한 요건은 모든 사건에 묵시적으로 적용되지만, 유해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구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은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절차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에 따른 쟁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흠결이 중대한 흠결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재판소는 실수나 개별 조치의 불이행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절차와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흠결, 즉 해당 조사에서 사건의 상황이나 책임자를 규명할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흠결만을 고려한다(*S.M. v. Croatia* [GC], §§ 312-320; *Rantsev v. Cyprus and Russia*, § 288).

71. 인신매매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회원국은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국내 조사를 수행할 의무뿐만 아니라 국경 간 인신매매 사건에서 영토 밖에서 발생한 사건의 조사에 있어 다른 국가의 관련기관과 효과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진다(*Rantsev v. Cyprus and Russia*, § 289 and *Zoletic and Others v. Azerbaijan*, § 191).

72. 재판소는 *Rantsev v. Cyprus and Russia* 사건에서 러시아 국가기관이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개별 대리인이나 인신매매 조직망이 인신매매 피해자인 란체바를 키프로스로 이송하는 데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조사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308). 그러나 재판소는 *M. and Others v. Italy and Bulgaria* 사건에서 불가리아 정부의 책임을 유발했을 수 있었던 상황이 인신매매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169).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또한 불가리아 국가기관이 청구인들을 지원하고 이탈리아 국가기관과 지속해서 연락하고 계속 협력했다고 판결했다(§ 169).

73. *J. and Others v. Austria*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해외에서 외국인들에 의해 자행된 인신매매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청구를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협약 제4조가 이 조의 절차적 규정에 따라 국가에 해외에서 자행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규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가 관할권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방지 행동에 관한 유럽평의회 협약이 당사국이 자국 영토에서,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민을 상대로 행해진 모든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규정하도록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114).

74. *Choudury and Others v. Greece* 사건에서, 재판소는 그리스에 절차적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이 판결의 근거로 특히 소의 대상인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에 관한 광범위한 쟁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인들이 뒤늦게 소를 제기한 점에 근거하여 검찰이 21명의 청구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를 거부한 사실을 제시했다(§§ 117-121). 재판소는 또한 국내법원이 청구인들의 상황이 예속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매우 좁은 관점에서 이 상황을 분석한 결과 피고 중 어느 누구도 인신매매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고 따라서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123-127).

75. *S.M. v. Croatia* [GC] 사건에서, 청구인은 전직 경찰관인 T.M.이 자신을 육체적, 심리적 강제를 행사하여 매춘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인신매매의 잠재적 희생자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재판소는 행정기관에서 잠재적 희생자 지위를 인정한 것이 인신매매 범죄의 구성요소가 수행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문제는 이후 진행될 형사절차에서 결정될 문제였다. 인신매매의 세 가지 구성요소에 대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재판소는 청구인이 페이스북을 통한 “모집”, 청구인에 대한 무력 행사, 은닉 및 채무 노역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지적했다. 그 밖에도, 전직 경찰관인 T.M.은 청구인의 취약성을 악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인신매매 및/또는 강제 매춘을 당했다는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를 제시하면서 다툼 만한 쟁점이 있는 주장을 개진했다고 판단했다. 다툼 만한 쟁점이 있는 주장과 일응의 증거를 검토한 절차적 대응에서는 중대한 흠결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양 당사자 간 관계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명백한 일련의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청구인이 사건의 상황을 착취와 연관 지어 일관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할 능력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증언에 지나치게 큰 중요성을 부여했다.

76. 국제 인신매매와 이주노동자의 강제적 노동 혐의를 다룬 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사건 기록의 자료, 특히 전문 비정부기구가 작성한 보고서가 청구인이 설명한 사건 상황을 대체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다툼 만한 쟁점이 있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Zoletic and Others v. Azerbaijan*, §§ 161-164). 그뿐만 아니라, 유럽인종차별위원회(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 ECRI)와 비정부기구인 유럽평의회 인신매매 전문가그룹(GRETA)의 국가별 보고서와 청구인들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가기관이 참고할 수 있었던 정보를 고려할 때,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인신매매 및 강제적 노동 혐의에 대해 다툼 만한 쟁점을 제기한 청구인들의 주장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의 직권으로 효과적인 범죄 수사가 시작될 필요가 있었다(*Ibid.*, § 200).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범죄 수사가 수행되지 않았다(*Ibid.*, 208).

77. *T.I. and Others v. Greece*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한 착취 혐의에 관한 절차의 실효성 외에도 청구인들의 신청한 비자 발급 절차의 실효성을 검토했다. 사건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시기에 러시아와 그리스의 인신매매 현상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고, 청구인들이 제기한 주장의 심각성과 청구인들이 공무원의 인신매매 조직망 연루 혐의를 고발한 사실을 특히 고려할 때, 국가기관은 비자를 발급하기에 앞서 비자 신청에 대해 상세한 검토가 수행되었는지 확인함으로써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의무가 있었다. 재판소는 특히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관할기관이 필요한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결과 기소(위조직/위조문서 행사죄)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소환장을 증인에게 송달하려는 시도가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했으며, 청구인이 민간 당사자로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했던 신청서에 증인의 주소를 기재했음에도 이 주소를 찾아가 증인의 소재를 알아내려고 시도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인용 판례 목록

이 해설서에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가 내린 판결 또는 결정과 유럽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 또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모든 참조는 유럽인권재판소 재판부가 본안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소재판부의 판단 중 이 개정판 발간 당시 협약 제44조에서 의미하는 최종확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래 목록에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협약 제44조제2항에는 "(a) 당사자가 사건을 대재판부 회부를 요청하지 않기로 선언하는 경우, (b) 당사자가 대재판부 회부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또는 (c) 대재판부의 패널(panel)이 제43조에 따른 회부 요청을 거부한 경우 소재판부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재판부의 패널이 회부 요청을 수락한 경우, 소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라 이후 대재판부의 판단이 최종판단이 됩니다.

이 해설서의 전자판에 인용된 사건의 하이퍼링크는 재판소 판례(대재판부, 소재판부 및 위원회의 판결과 결정, 언급된 사건, 권고적 의견 및 판례정보노트(Case-Law Information Note)의 결정요지(legal summary), 위원회의 판례(결정 및 보고서), 그리고 각료위원회 결의에 접속할 수 있는 HUDOC 데이터베이스(<http://hudoc.echr.coe.int>)로 연결합니다.

재판소는 두 공식 언어인 영어나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판결과 결정을 내립니다. HUDOC는 또한 30개 이상의 비공식 언어로 번역된 많은 주요 판례의 번역본과 제3자가 작성한 약 100개의 온라인 판례집에 대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인용 사례에 사용할 수 있는 인용된 사건에 대한 번역본들은 해당 사건의 하이퍼링크를 클릭한 후 연결되는 **HUDOC** 데이터베이스에서 '번역본(Language versions)' 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

[A.I. v. Italy](#), no. 70896/17, 1 April 2021  
[Adigüzel v. Turkey](#) (dec.) no. 7442/08, 6 February 2018  
[Antonov v. Russia](#) (dec.), no. 38020/03, 3 November 2005

### —B—

[Bayatyan v. Armenia](#) [GC], no. 23459/03, ECHR 2011  
[Bucha v. Slovakia](#) (dec.), no. 43259/07, 20 September 2011

### —C—

[C.N. v. the United Kingdom](#), no. 4239/08, 13 November 2012  
[C.N. and V. v. France](#), no. 67724/09, 11 October 2012  
[Chitos v. Greece](#), no. 51637/12, ECHR 2015  
[Chowdury and Others v. Greece](#), no. 21884/15, ECHR 2017

—D—

*De Wilde, Ooms and Versyp v. Belgium*, 18 June 1971, Series A no. 12

—F—

*Floroiu v. Romania* (dec.), no. 15303/10, 12 March 2013  
*Four Companies v. Austria*, no. 7427/76, Commission decision of 27 September 1976,  
Decisions and Reports (D.R. 7)

—G—

*G.S. v. the United Kingdom* (dec.), no. 7604/19, 23 November 2021  
*Graziani-Weiss v. Austria*, no. 31950/06, 18 October 2011

—I—

*Iv. Norway*, no. 1468/62, Commission decision of 17 December 1963

—J—

*J and Others v. Austria*, no. 58216/12, 17 January 2017  
*J.A. v. France* (dec.), no. 45310/11, 27 May 2014  
*Johansen v. Norway*, no. 10600/83, Commission decision of 14 October 1985, Decisions and  
Reports 44

—K—

*Karlheinz Schmidt v. Germany*, 18 July 1994, Series A no. 291-B

—L—

*L.E. v. Greece*, no. 71545/12, 21 January 2016  
*Lazaridis v. Greece* (dec.), no. 61838/14, 12 January 2016

—M—

*M. and Others v. Italy and Bulgaria*, no. 40020/03, 31 July 2012  
*Meier v. Switzerland*, no. 10109/14, ECHR 2016  
*Mihal v. Slovakia* (dec.), no. 31303/08, 28 June 2011

—N—

*N.Ç. v. Turkey*, no. 40591/11, 9 February 2021

—R—

*Radi and Gherghina v. Romania* (dec.), no. 34655/14, 5 January 2016  
*Rantsev v. Cyprus and Russia*, no. 25965/04, ECHR 2010  
*Reitmayr v. Austria*, no. 23866/94, Commission decision of 28 June 1995

—S—

*S. v. Germany*, no. 9686/82, Commission decision of 4 October 1984, Decisions and Reports 39  
*S.M. v. Croatia* [GC], no. 60561/14, 25 June 2020  
*Schuitemaker v. the Netherlands* (dec.), no. 15906/98, 4 May 2010  
*Seguin v. France* (dec.), no. 42400/98, 7 March 2000  
*Siliadin v. France*, no. 73316/01, ECHR 2005-VII  
*Sokur v. Ukraine* (dec.), no. 29439/02, 26 November 2002  
*Steindel v. Germany* (dec.), no. 29878/07, 14 September 2010  
*Stummer v. Austria* [GC], no. 37452/02, ECHR 2011

—T—

*T.I. and Others v. Greece*, 40311/10, 18 July 2019  
*Tibet Menteş and Others v. Turkey*, nos. 57818/10 and 4 others, 24 October 2017  
*Twenty-one detained persons v. Germany*, nos. 3134/67 and 20 others, Commission decision of 6 April 1968, Collection 27

—V—

*V.C.L. and A.N. v. the United Kingdom*, nos. 77587/12 and 74603/12, § 158-159, 16 February 2021  
*V.F. v. France* (dec.), no. 7196/10, 29 November 2011  
*Van der Mussele v. Belgium*, 23 November 1983, Series A no. 70  
*Van Droogenbroeck v. Belgium*, 24 June 1982, Series A no. 50

—W—

*W., X., Y., and Z. v. the United Kingdom*, nos. 3435/67 and 3 others, Commission decision of 19 July 1968, Collection 28

—X—

*X. v. Germany*, no. 8410/78, Commission decision of 13 December 1979, Decisions and Reports 18

—Z—

*Zarb Adami v. Malta*, no. 17209/02, ECHR 2006-VIII  
*Zhelyazkov v. Bulgaria*, no. 11332/04, 9 October 2012  
*Zoletic and Others v. Azerbaijan*, no. 20116/12, 7 October 2021